

2017년 함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27.

함양군수

- ◆ 우리 군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85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9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301억원)보다 450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7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01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64억원입니다.
- ◆ 우리 군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6.9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3.22%입니다.
- ◆ 우리 군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2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자체수입 대비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부족한 실정이지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08년 이후 부채 없이 건전한 재정운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예산수요 충족 및 지속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새로운 자체수입 및 자주재원 확보와 더불어 적시적지의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gn.go.kr> 정보공개-재정정보-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 이진호(055-960-4212)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합양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851	3,559	292	4,301	4,058	243
	세출예산	3,851	3,559	292	4,301	4,058	243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6.95 (6.62)	14.51 (7.24)	2.44 (-0.62)	16.85 (10.58)	16.44 (10.60)	0.41 (-0.02)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3.22 (52.89)	59.54 (52.26)	3.68 (0.63)	63.32 (57.04)	62.12 (56.28)	1.20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2	109	-98	24	27	-3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2(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괴산군, 충남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전남 화순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 의성군, 울진군, 경남 고성군, 하동군, 합천군)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제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85,075	360,345	-	18,558	6,17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27,616	332,934	337,468	355,920	385,07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7,671	100	298,874	100	305,018	100	324,338	100	360,345	100
지방세	10,077	3.4	13,006	4.4	14,532	4.7	13,117	4.0	13,900	3.9
세외수입	21,826	7.3	5,940	2.0	8,424	2.8	10,350	3.2	9,972	2.8
지방교부세	135,145	45.4	130,979	43.8	132,132	43.3	134,974	41.6	154,679	42.9
조정교부금 등	5,616	1.9	6,227	2.1	6,300	2.1	11,050	3.4	12,050	3.3
보조금	125,007	42.0	122,623	41.0	122,922	40.3	131,243	40.5	132,524	36.8
지방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20,099	6.7	20,708	6.8	23,605	7.3	37,220	10.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85,075	360,345	-	18,558	6,17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27,616	332,934	337,468	355,920	385,07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7,671	100	298,874	100	305,018	100	324,338	100	360,345	100
일 반 공 공 행 정	19,104	6.4	20,477	6.8	16,587	5.4	22,658	7.0	29,112	8.1
공공질서 및 안전	4,193	1.4	6,532	2.2	7,926	2.6	7,442	2.3	2,780	0.8
교 육	2,686	1.0	2,597	0.9	1,633	0.5	3,080	0.9	3,212	0.9
문 화 및 관 광	21,354	7.2	23,655	7.9	21,784	7.1	19,427	6.0	23,330	6.5
환 경 보 호	21,435	7.2	23,550	7.9	15,554	5.1	20,390	6.3	26,412	7.3
사 회 복 지	53,302	17.9	54,005	18.1	61,568	20.2	62,637	19.3	63,975	17.8
보 건	5,460	1.8	4,566	1.5	3,969	1.3	3,886	1.2	4,040	1.1
농 립 해 양 수 산	64,716	21.7	74,386	24.9	88,456	29.0	85,384	26.3	87,725	24.3
산 업 · 중 소 기 업	2,715	1.0	4,902	1.6	3,600	1.2	3,154	1.0	7,228	2.0
수 송 및 교 통	9,299	3.1	8,955	3.0	7,338	2.4	9,279	2.9	9,367	2.6
국 토 및 지 역 개 발	42,954	14.4	24,861	8.3	22,277	7.3	25,332	7.8	28,842	8.0
과 학 기 술	-	-	-	-	-	-	-	-	-	-
예 비 비	7,037	2.3	4,422	1.5	4,470	1.5	11,604	3.6	22,461	6.2
기 타	43,416	14.6	45,964	15.4	49,859	16.4	50,067	15.4	51,861	14.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82,548	389,180	390,950	391,196	391,441	1,945,315	0.6
자 체 수 입	27,436	27,790	27,841	27,906	27,964	138,937	0.5
이 전 수 입	301,913	307,924	309,429	309,492	309,709	1,538,467	0.6
지 방 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199	53,466	53,681	53,798	53,769	267,913	0.3
세 출	382,548	389,180	390,950	391,196	391,441	1,945,315	0.6
경 상 지 출	71,656	72,153	74,237	74,407	73,841	366,294	0.8
사 업 수 요	310,892	317,027	316,714	316,788	317,600	1,579,021	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355,920	385,075	29,155	8.19
함양군	355,920	385,075	29,155	8.19
공사·공단	-	-	-	-
출자·출연기관	-	-	-	-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우리군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6.9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6.95 (6.62)	360,345 (360,345)	61,092 (23,872)	299,253 (299,253)	-	- (37,220)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 2016년도 우리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4.2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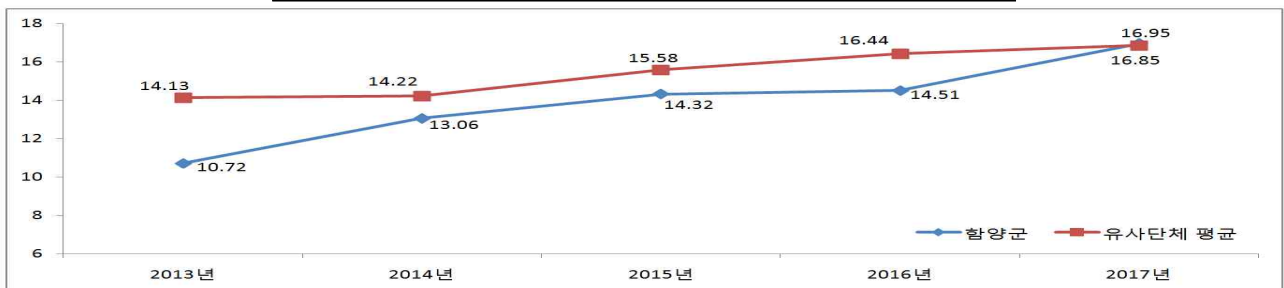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4.23 (7.65)	362,163 (362,163)	51,527 (27,691)	310,636 (310,636)	-	- (23,836)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10.72	13.06	14.32 (7.53)	14.51 (7.24)	16.95 (6.62)
최종예산	18.08	20.35	16.55 (7.74)	14.23 (7.65)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10.72%로 지난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유사 지자체의 평균과 비슷한 16.95%를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전재원 대비 자체세입의 비율이 낮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자체세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3.2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3.22 (52.89)	360,345 (360,345)	227,821 (190,601)	132,524 (132,524)	-	- (37,220)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1.3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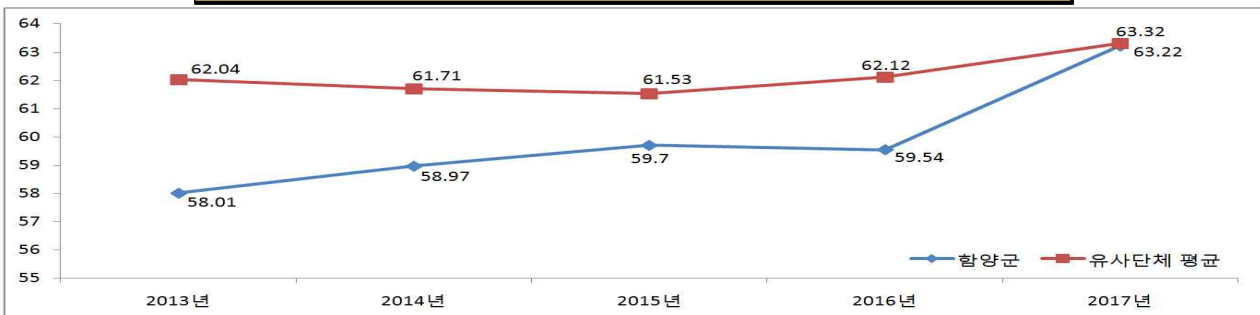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1.38 (54.8)	362,163 (362,163)	222,310 (198,474)	139,853 (139,853)	-	- (23,836)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58.01	58.97	59.70 (56.76)	59.54 (52.26)	63.22 (52.89)
최종예산	62.45	65.91	62.93 (59.34)	61.38 (54.8)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2013년 이후 유사 지자체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자주도를 유지하며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6년 대비 2017년의 자주재원 증가폭(34,726백만원 증)이 보조금의 증가폭(1,281백만원 증)보다 더 커짐에 따라 2017년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근접한 63.22% 기록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용자 회수 (C)	용자 지출 (D)	순용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28,753	359,778	1,542	4,367	2,825	35,004	362,602	-33,849	1,155
일반회계	323,245	344,801	0	100	100	29,600	344,901	-21,656	7,944
기타 특별회계	5,442	13,528	1,542	4,267	2,725	5,404	16,253	-10,811	-5,407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67	1,449	0	0	0	0	1,449	-1,383	-1,383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용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용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15,053	-21,495	-22,179	-25,161	-33,849
통합재정수지 2	10,745	10,571	10,585	10,939	1,155

☞ 2017년 당초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2 세입 총계는 2016년 305,889백만원 대비 22,86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출 총계는 2016년 327,800백만원 대비 31,978백만원 증가
 ☞ 세입 대비 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흑자재정은 유지하였으나 그 수치는 2016년 10,939백만원에서 2017년 1,155백만원으로 9,784백만원 감소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용자 회수 (C)	용자 지출 (D)	순용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44,112	365,718	3,413	5,261	1,848	34,292	367,566	-23,454	10,838
일반회계	338,432	351,916	-	-	-	19,731	351,916	-13,484	6,247
기타 특별회계	5,299	11,838	3,413	5,261	1,848	14,561	13,685	-8,387	6,174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381	1,965	-	-	-	-	1,965	-1,583	-1,583

-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용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용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0,271	-36,421	-44,030	-31,408	-23,454
통합재정수지 2	10,558	10,771	10,571	10,543	10,838

☞ 2016년 최종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2 세입 총계는 2015년 312,864백만원 대비 31,24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출 총계는 2015년 340,987백만원 대비 24,731백만원 증가
 ☞ 지출 대비 세입의 증가폭이 더 큼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2 수치는 2015년 10,543백만원에서 2016년 10,838백만원으로 295백만원 증가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군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6	14,250
여성정책추진사업	5	52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3	10,80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8	2,924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군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85,075	620	1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원 기타 부칙	제11조(시행규칙) 부칙	제15조(시행규칙) 부칙	제24조(시행규칙) 부칙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620	
안전건설과	시목마을안길 확장공사	50	
"	관변마을 인도설치공사	50	
"	하정농로 확포장사업	50	
"	산두 배나무골 농로포장공사	50	
"	옥동 안평마을 양과 야적시설 설치공사	50	
"	분덕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	
"	용수막 농로 포장공사	25	
"	지곡면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50	
"	이전마을 삼우지 배수로 정비사업	40	
"	죽당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30	
"	은행마을 앞들 농로포장공사	25	
"	해평마을 건너들 아스콘 포장공사	25	
"	식송마을 뒷길 농로 정비사업	15	
"	대로마을 뒷들 농로 정비사업	35	
"	운산(상신)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5	
"	하대평마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5	
"	가촌 농로 포장공사	50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군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92	213	229	378,903	350,200	28,703
의회사무과	1	1	3	2	927	954	-27
기획감사실	1	6	13	8	32,173	17,633	14,539
주민생활지원실	1	11	19	31	63,510	62,192	1,318
행정과	1	7	11	13	58,707	56,544	2,163
재무과	1	3	8	7	2,598	3,877	-1,279
민원과	1	5	12	11	4,193	3,137	1,056
문화관광과	1	5	12	10	21,970	17,997	3,973
산림녹지과	1	5	12	14	25,708	20,785	4,923
경제과	1	6	14	17	9,980	14,926	-4,946
건설교통과	1	4	10	12	40,576	35,488	5,087
안전관리과	1	4	8	15	15,067	19,549	-4,482
도시환경과	1	3	11	12	16,547	14,880	1,666
지역발전과	1	3	10	5	13,075	11,709	1,366
보건소	1	4	13	13	4,518	4,348	171
농축산과	1	5	13	14	17,596	19,413	-1,817
작물지원과	1	6	12	13	15,726	14,500	1,226
농업자원과	1	6	15	16	7,498	9,943	-2,445
상하수도사업소	1	5	9	12	23,778	17,481	6,297
문화시설사업소	1	3	8	4	1,594	1,686	-93
함양읍	0	0	0	0	520	519	1
마천면	0	0	0	0	299	299	0
휴천면	0	0	0	0	242	242	0
유림면	0	0	0	0	245	245	0
수동면	0	0	0	0	248	247	0
지곡면	0	0	0	0	246	245	0
안의면	0	0	0	0	385	385	0
서하면	0	0	0	0	237	237	0
서상면	0	0	0	0	263	263	0
백전면	0	0	0	0	256	255	1
병곡면	0	0	0	0	222	221	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6.95	63.22	17.75	27.29	54.03	158.69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 전(2013년 이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0	-3
	부단체장	36	34	-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7	205	-22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57	53	-4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72	-
	의원국외여비	26	26	-
지방보조금		18,244	10,288	-7,95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76	876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44	944	-
공무원 일·숙직비		241	241	-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2,271	1,879
인건비 절감	0	36
지방의회경비 절감	39	40
업무추진비 절감	21	1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1,319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63	822
지방청사 관리·운영	2,374	2,285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8,113	-3,462
지방세 징수율 제고	-74	-369
지방세 체납액 축소	-2,902	-2,671
경상세외수입 확충	82	5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149	-473
탄력세율 적용	-7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6년에 우리 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당사항 없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6년에 우리 군이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당사항 없음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